

서울특별시 공무원 정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 사 보 고 서

의안번호	774
------	-----

2019. 7. 1.
기획경제위원회

I. 심사경과

가. 제출일자 및 제출자 : 2019년 6월 28일, 서울특별시장

나. 회부일자 : 2019년 6월 28일

다. 상정결과 :

【서울특별시의회 제288회 임시회】

- 제1차 기획경제위원회(2019.7.1.)상정, 제안설명, 검토보고, 질의 및 답변, 의결(원안가결)

II. 제안설명의 요지(기획조정실장 서정협)

1. 제안이유

-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기준 등에 관한 규정」이 개정되어 3급 이상 행정기구 수가 확대되었고, 출자·출연기관 감사·조사 기능 확대 등 시정 핵심사업의 추진력을 확보하며, 시의회 예산

결산특별위원회 전문위원 신설 등 소요인력을 적기에 지원하고자 서울시 총 정원을 18,472명에서 18,533명으로 61명 증원함.

2. 주요내용

- 가. 시민민주주의 실현을 위한 ‘서울민주주의위원회’ 등 3급 이상 행정기구 신설, 출자·출연기관 감사·조사 전담기구 ‘공공감사담당관’ 신설 등 시정 핵심사업 추진인력 증원(+56명)
- 나. 시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전문위원 및 상임위원회 전문위원실 의정활동 지원인력 증원(+5명)
- 다. 행정기구 신설 및 업무이관 등에 따른 기관 간 정원이체(58명)
 - (1) 서울민주주의위원회 신설
 - : 본청 4급 △3명, 5급 이하 △55명 → 합의제 4급 +3명, 5급 이하 +55명
 - (2) 납세자보호관 업무 이관(시민감사옴부즈만위원회→법무담당관)
 - : 합의제 5급 이하 △1→본청 5급 이하 +1
 - (3) 서울생활사박물관 업무 이관(박물관과→서울역사박물관)
 - : 본청 연구관 △1 → 사업소 연구관 +1

Ⅲ. 검토보고 요지 (수석전문위원 강상원)

가. 개정안의 개요

- 개정안은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기준 등에 관한 규정」 (이하 “지방행정·정원규정”)의 개정에 맞춰 3급 이상 행정기구의 수를 확대하고, 출자·출연기관 감·조사기능 확대, 시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4급 전문위원 신설 등에 따른 소요인력을 적기에 지원하고자 총 정원을 18,472명에서 18,533명으로 61명 증원하려는 것임.

〈정원 조정 내역〉

구분	총 정원	정무	일반								별정	연구	지도	소방	교육
			1급	2·3급	3급	3·4급	4급	4·5급	5급이하						
현행	18,472	2	10,475	7	23	18	5	242	10	10,170	37	387	24	7,027	520
변경후	18,533 (+61)	2	10,536 (+61)	7	24 (+1)	20 (+2)	5	246 (+4)	10	10,224 (+54)	37	387	24	7,027	520

- 구체적으로는 ▷ 서울민주주의위원회 신설 15명, ▷ 서울혁신기획관 10명, ▷ 도시기반시설본부 7명, ▷ 감사위원회 6명, ▷ 기후환경본부 5명, ▷ 의회사무처 5명, ▷ 행정국, 공공개발기획단 각각 4명, ▷ 경제정책실 3명, ▷ 복지정책실, 도시계획국 각각 1명을 보강할 계획임.
- 이 밖에 행정기구 신설과 업무이관 등에 따라 본청 4급 이하 3명, 5급 이하 54명, 연구관 1명 등 58명의 정원을 합의제 4급 3명, 5급 54명, 사업소 연구관 1명으로 이체(상계조정)하고 있음.

나. 분야별 인력증원 주요내용에 대한 검토

(1) 3급 이상 기구 수 확대(+3명)

- 「지방행정·정원규정」의 개정(2019.4.30)으로 서울시에 설치할 수 있는 실·국·본부의 수가 현행의 20% 범위로 확대됨에 따라(18개→21개), 3급 이상의 부서장 정원을 3명 증원하게 되었음.
- 그 동안 법령에 근거 없이 임시기구로 운영되던 ‘복지기획관’(3급 +1명)과 보좌기관인 ‘경제일자리기획관’을 각각 3급 보조기관의 정원으로 확보하고 합의회행정기관인 서울민주주의위원회 위원장(2·3급)의 정원을 신설할 예정임.
- 그러나 이번 자율기구 신설 이후에도 4개의 법외 임시기구(국제협력관, 대기기획관, 재생정책기획관, 주거사업기획관)가 여전히 남아 있게 되어 조속한 정비가 요구되며, 중·장기적으로는 자치조직권 확대 차원에서 법·제도가 개선되어야 할 것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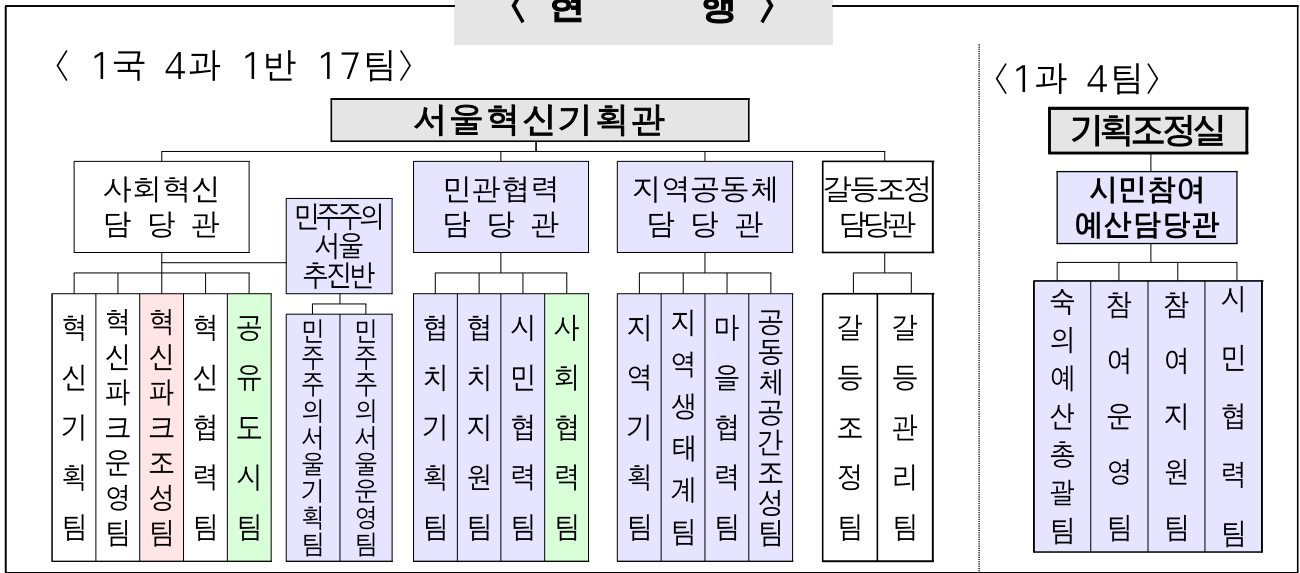
(2) 서울민주주의위원회 신설에 따른 인력증원(+15명)

- 서울시는 시민민주주의 실현을 위한 사항을 심의·조정하기 위하여 합의회행정기관인 서울민주주의위원회(이하 “민주주의위원회”)를 시장 소속으로 설치·운영할 계획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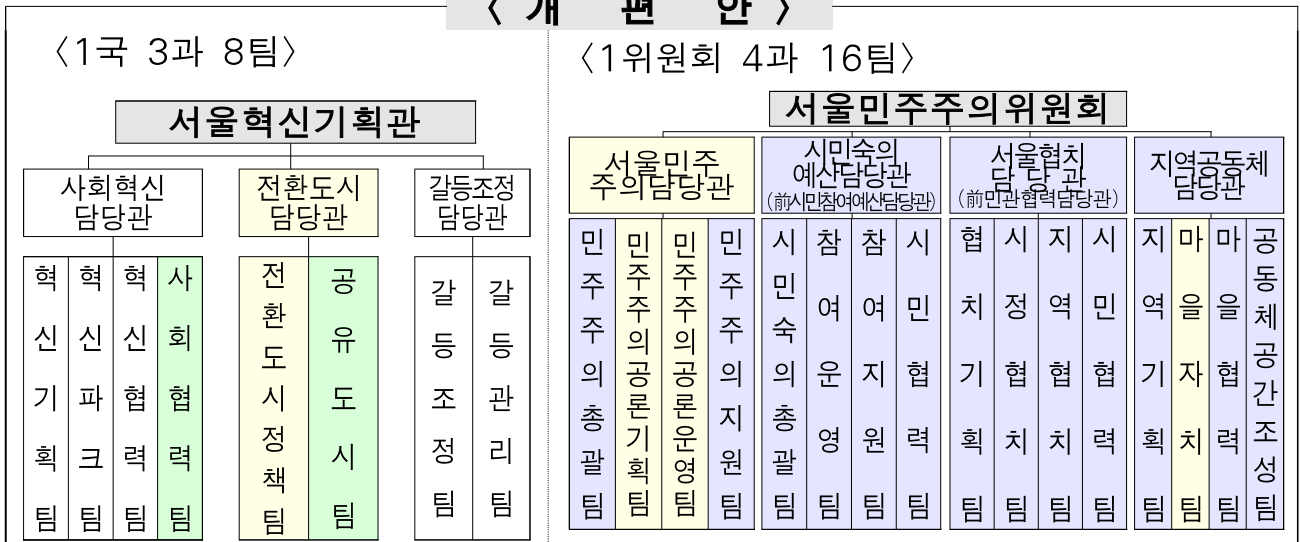
- 민주주의위원회에는 서울혁신기획관 소관의 '민관협력담당관'과 '지역공동체 담당관', 기획조정실 소관의 '시민참여예산담당관'의 업무가 이관되고, '민주주의서울추진반'은 폐지되고, '서울민주주의담당관'으로 확대 개편하게 됨.

〈서울민주주의위원회 및 서울혁신기획관 조직변경(안)〉

〈 현 행 〉



〈 개 편 안 〉



신 설
 부서 내 이관
 부서 외 이관
 감 축

- 이를 위해 서울민주주의담당관(+11명), 시민숙의예산담당관(+3명), 지역공동체담당관(+1) 등 총 15명의 증원을 요청하고 있음.
- 그러나 서울민주주의위원회는 설립근거 조례 제정 단계부터 위원회 업무가 지나치게 추상적이고 광범위해 업무의 독립성이나 다수의 의사결합이 요구되는 합의제행정기관의 성격에는 부합하지 아니하며, 타 부서와의 업무 중첩 등의 비판을 받았음.

(3) 서울혁신기획관 소관으로 전환도시담당관 신설(+10명)

- 전환도시담당관은 서울혁신기획관실에 신설되는 조직으로 기존의 경제, 물질 위주의 '성장' 패러다임을 삶의 질 위주의 '성숙'으로 이동하는 '전환도시 서울'을 추진하기 위해 2개 팀(전환도시정책팀, 공유도시팀) 12명으로 구성되며 총 10명의 증원을 요청함.
- 서울시는 '전환도시 서울 컨퍼런스(2018.10.11.)'를 통해 서울의 전환비전을 제시하고, 올해부터 전환비전에 대한 과제와 전략을 수립, 내년에 전환의 구체적 정책을 실행한다는 계획임.
- 그러나 인력충원의 근거로 들고 있는 환경·생태, 에너지자립 도시, 지속가능발전 등의 전환목표 설정과 대안적 지표의 발굴은 공무원 조직에서 직접 수행하기 어려우며 외부 연구기관과 전문가 등과의 거버넌스를 통해 완성되어야 할 업무임.

- 또한, 환경·생태, 에너지자립, 지속가능발전 등의 유관 기능을 수행하고 있는 타 부서가 이미 존재하고 있어, 구체적인 실행력을 담보할 수 없는 부서의 신설과 인력의 증원이 필요한지 의문임.
- 이 밖에도 「지방행정·정원규정」에서는 과(課) 단위의 조직 설치시 시·도의 경우 5급 4명 이상 포함되는 업무량이 있는 경우에 한하여 설치토록 일반요건을 규정하고 있는데(제6조제4항), ‘전환도시담당관’은 2개 팀에 불과함.
- 따라서, 전환도시담당관의 업무량의 적정성과 수행 기능의 명확성, 독자성, 계속성과 중복성 등에 대한 사전 검증이 충분히 고려되었는지 의문시¹⁾되므로, 인력증원에 신중한 판단이 요구됨.

(4) 도시기반시설본부 사업 증가와 부서신설에 따른 인력 증원(+7명)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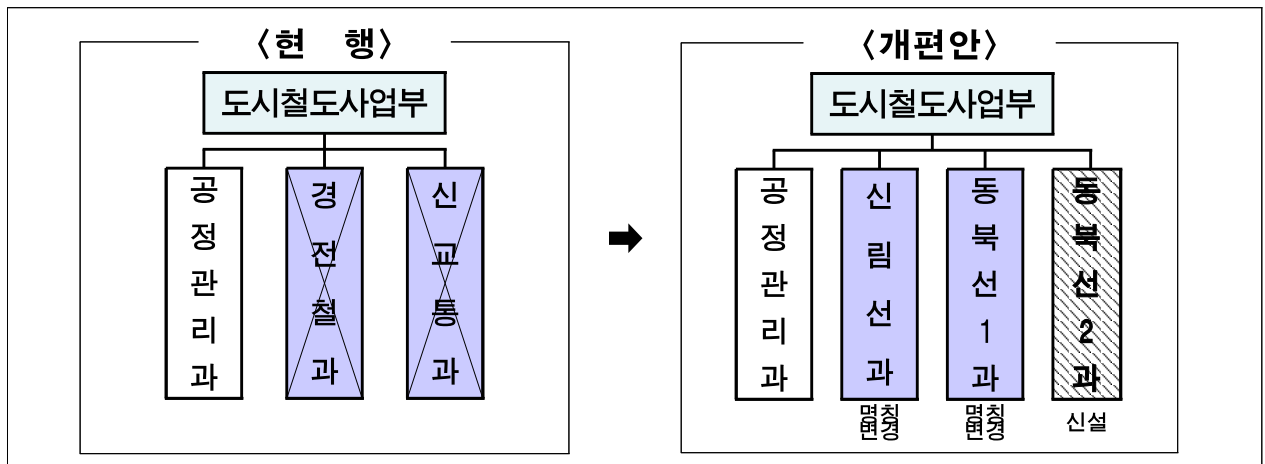
- 도시기반시설본부는 잠실주경기장 리모델링사업과 서부선 민간투자사업 추진, 하남선 전동차 시운전, 동북선 2과 신설을 위해 총 7명의 인력 증원을 요청함.

1) 「지방행정·정원규정」에서는 행정기구 설치시 고려사항을 다음과 같이 제시하고 있음.
제5조(기구의 설치시 고려사항)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기구를 설치하거나 개편하려는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려하여야 한다.

1. 기구의 목적과 기능의 명확성·독자성·계속성
2. 기구가 수행하여야 할 사무 또는 사업의 성질과 양에 따른 규모의 적정성
3. 규모와 기능이 유사한 다른 기관과의 균형성
4. 주민편의, 행정능률 등을 고려한 효율성
5. 통솔범위, 기능의 중복유무 등 기구의 능률성
6. 사무의 위탁가능성

- 도시기반시설본부 시설국은 국제교류복합지구 체육·문화시설 정비사업의 일환으로, 공공기여를 통해 이뤄지는 잠실주경기장 리모델링 사업의 초기 설계부터 준공까지의 공정을 관리하기 위해 1명의 증원을 요청함.
- 도시기반시설본부 도시철도국은 서부선 민간투자사업의 제3자 제안공고 작성, 협상대상자 지정 등 계획업무 수행을 위한 2명과 ‘하남선’ 전동차 시운전(2019.7.~2020.12.)을 위한 1명의 증원을 요청함.
- 도시철도국 도시철도사업부는 기존 경전철과를 신림선과로, 신교통과를 동북선 1과로 명칭 변경하고, 올해 9월로 예정된 동북선공사 착공을 위해 동북선2과를 신설함에 따라 3명의 증원을 요청함.

〈도시기반시설본부 도시철도국 조직개편(안)〉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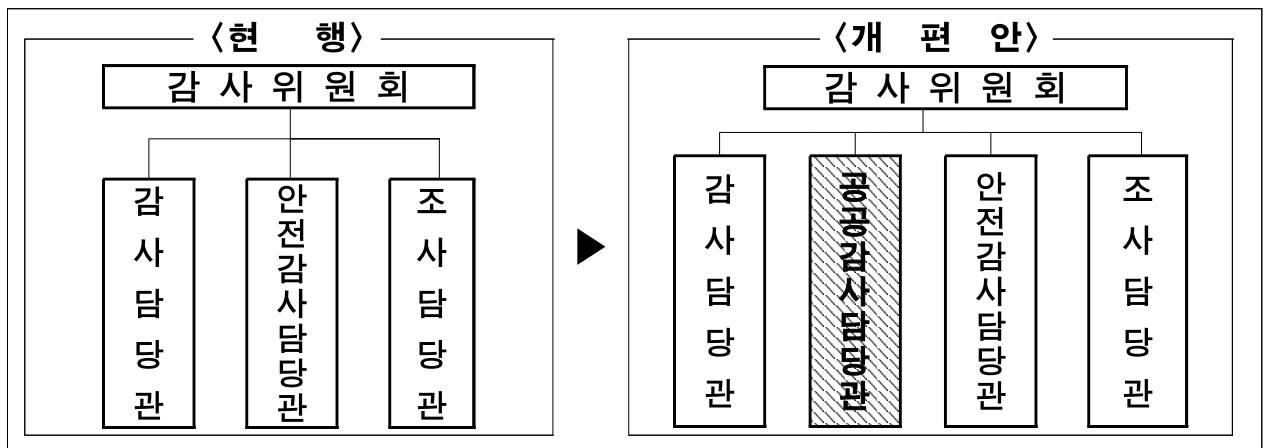
- 서울시 역점사업인 국제교류복합지구 관련 사업과 교통복지를 위한 경전철 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한 도시기반시설본부의 인력충원 요구는 타당한 것으로 보임.

- 다만, 안전관리를 강화시키는 차원에서 관리인력 보다는 현장중심의 충원이 이루어져 사고위험성을 감소시킬 필요성이 있음.

(5) 감사위원회에 출자·출연기관 전담 관리부서 신설(+6명)

- 서울시는 SH공사 보상비리, 교통공사 채용비리 의혹, 디지털재단 기관장 비리 등 최근 출자·출연기관의 일탈사례가 빈번하게 발생함에 따라 시 차원의 관리감독 기능을 확대하고, 전문적이며 체계적인 감·조사 기능을 수행하기 위해 감사위원회 산하에 ‘공공감사담당관’을 신설할 예정임.

〈감사위원회 조직 개편안〉



- 공공감사담당관은 감사담당관에서 8명, 조사담당관에서 3명의 정원을 이관하여 3개팀 총원 17명으로 운영될 예정이고, 신규업무 발생 등을 감안하여 총 6명의 증원을 요청하였음.
- 투자·출연 기관의 감·조사 필요성은 시의회에서도 그동안 빈번하게 지적한 바 있으며, 별도의 감사조직을 갖추지 못하고 비상근인 감사나

감사역만 두고 있어 기관장의 일탈행위나 임직원의 비리 등이 발생할 경우 내부자정이 어려울 수 있으므로 전담조직 신설의 필요성은 인정됨.

- 다만 「지방공기업법」이나 「지방자치단체 출자·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서 보장하고 있는 투자·출연기관의 경영 자율성을 훼손하지 않는 범위에서 감사활동이 이뤄져야 할 것이며, 기존에 이들 공공기관을 관리하던 기획조정실 공기업과와의 권한배분과 업무협조가 효율적으로 이루어져야 할 것임.

(6) 기후환경본부 미세먼지 저감 대책 추진을 위한 전담인력 증원(+5명)

- 기후환경본부는 미세먼지 저감과 관련된 새로운 사업 시행과 목표 상향에 따라 총 5명의 증원을 요청하였음.
 - 차량공해저감과는 ‘녹색교통진흥지역 운행제한 시행’(2019.7월)에 따라 원활한 제도 정착과 시민 혼란 감소를 위한 지속적인 홍보와 교육 전담, 비상저감조치 발령 시 운행제한 단속 차량 민원·과태료 부과 등을 위해 1명의 증원을 요청함.
 - 또한 ‘생활권미세먼지 그물망 대책(2019.4.28.)’ 발표에 따른 도심경찰버스 친환경차 도입과 공회전 방지대책 추진, 자동차 정비업소·검사소 관리를 통한 배출가스 관리 업무 신규추진에 따른 전담인력으로 1명의 증원을 요청함.

- 대기정책과는 미세먼지 해결을 추진하기 위한 ‘미세먼지연구소’²⁾ 사무국 운영, 친환경보일러 보급 등 사업의 확대, 미세먼지 집중관리구역 지정을 위한 사전조사와 협력·관리 방안 마련과 공동주택 공조기 공동관리체제 마련 등의 신규사업 추진을 위해 3명의 증원을 요청함.
- 기후환경본부가 요청한 인력증원은 최근 재난으로 규정된 미세먼지 대책을 적극적으로 수립·시행하기 위한 것으로, 미세먼지의 심각성과 대책마련을 위한 시민들의 수요를 반영한다는 측면에서 시의적절하며 증원의 필요성이 인정됨.

(7) 시의회사무처 인력보강 등(+5명)

- 시의회사무처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 4급 수석전문위원 신설과 소관 업무와 안전처리가 증가한 상임위원회 인력보강 등 5명의 증원을 요청함.
- 예산결산특별위원회 4급 수석전문위원 신설은 시·도의회에 4급 전문위원 1명을 추가 설치할 수 있도록 개정된 「지방행정 정원규정」의 내용을 반영한 것임.
- 예산결산특별위원회는 그동안 5급 전문위원과 5급 행정지원팀장으로 운영되어 왔으나, 4급 수석전문위원의 신설로 보다 책임성이 있는 예·결산 검토와 위원회 운영이 가능해질 것으로 기대됨.

2) 서울연구원, 서울기술연구원, 서울시보건환경연구원으로 구성된 미세먼지 저감기술 개발 및 분석·전담 조직. 2019.5월 서울시보건환경연구원내에 사무국 사무실 마련.

(8) 행정국 인사과·자치행정과 인력 보강(+4명)

- 행정국은 행정환경 변화에 따른 업무량 증가를 이유로 인사과와 자치행정과에 각각 2명씩 총 4명의 인력 증원을 요청함.
- 인사과는 인사전산시스템 개발 대상의 증가와 공무원제도의 체계적 관리를 위한 공무원 급여프로그램 개발을 위해 2명의 증원을 요청함.
- 자치행정과는 ‘찾아가는 동주민센터 사업’의 확대시행과 서울시민카드 서비스 제공 확대를 위해 2명의 증원을 요청함.
- 인사제도 변화에 맞춰 신규로 늘어난 전산프로그램의 개발과 관리를 위한 인력이 보강은 필요하다고 판단되며, 다만 활용도가 낮은 서울시민카드 사업을 위해 추가적인 인력 증원이 필요한지도 재론의 여지가 있음.

(9) 공공개발기획단 ‘독립운동 공간 조성’, ‘사전협상제도 확대운영’에 따른 증원(+4)

- 공공개발기획단은 ‘효창운동장 독립운동 공간 조성’과 ‘사전협상제도 확대 운영’에 따라 4명의 증원을 요청함.
- 효창운동장 독립운동 공간 조성 사업은 문재인 대통령의 효창공원 방문시 ‘효창공원 성역화’ 발언(2017.8.15.)과 시장요청사항(2018.7.4.)에 따라 추진하는 사업으로, 효창공원 일대 180만 m^2 를 대상으로 독립운동 기념공간을 조성할 계획임.

- 이를 위해 기본계획과 포럼운영, 거버넌스 구축·운영, 현상설계 공모, 타당성 조사 등을 추진하고 있으며, 2020년에 설계공모와 기본설계, 실시설계를 추진하기 위해 3명의 증원을 요청함.
- 현재 사업추진 인력은 임기제 6급 1명과 시간제임기제 다급 1명에 불과해 원활한 사업의 추진을 위해서는 조속한 인력충원이 필요함.
- 사전협상제도 확대 운영은 지난 3월 개정된 「서울특별시 도시계획 조례」의 내용이 반영된 것으로 유희토지 개발 또는 시설 이전·재배치 등 집중적인 정비가 필요한 지역에 대해 지구단위계획구역으로 지정할 수 있는 면적요건이 '1만 m^2 이상'에서 '5천 m^2 이상'으로 확대³⁾됨에 따라 1명의 증원을 요청함.
- 현재 사전협상 준비 중인 1개소, 향후 사전협상 검토 중인 10개소에 '사전협상제도'가 도입될 예정으로 사전협상제도의 효과적인 운영을 위해서는 인력충원이 뒷받침되어야 할 것임.

(10) 경제정책실 인력 증원(+2명)

- 경제정책실은 혁신챌린지 사업 추진과 양재R&D 혁신지구 조성 등을 위해 경제정책과와 거점성장추진단에 각각 1명의 증원을 요청함.
- 경제정책과는 글로벌챌린지 사업과 테스트베드 서울의 본격화와 서울

3) 「서울특별시 도시계획 조례」 제16조(지구단위 계획구역의 지정대상) ①~③ (생략)

④ 영 제43조제3항에서 조례로 정하는 면적이란 5천제곱미터를 말한다.

혁신챌린지 개최에 따라 1명의 증원을 요청함.

- 거점성장추진단은 양재 R&D 혁신허브 입주기업 확대를 위한 추가 공간 조성 및 서울바이오허브 2단계 조성사업 추진을 위해 1명의 증원을 요청함.
- 4차 산업혁명과 첨단산업 육성에 대응하기 위한 사업 확대는 긍정적이나 글로벌챌린지와 혁신챌린지의 경우 행사성 사업임을 감안하여, 인력 재 배치 등을 포함한 합리적 인력수급계획을 통해 해결해야 할 것임.

(11) 도시계획국 '사전 공공기획 제도' 등 도입에 따른 증원(+1명)

- 서울시는 지난 3월 12일, 향후 건립될 아파트 구조와 디자인에 지역 친화성과 공동체성을 보강하기 위한 대책으로 '도시·건축 혁신방안'을 발표하고, '사전 공공기획 제도'를 의무화했음.
- '사전 공공기획 제도'는 아파트 정비사업의 도시계획, 건축, 교통 분야별 세부 가이드라인을 마련하는 것으로, 도시계획국은 이를 위해 1명의 증원을 요청함.
- 그러나 당초 '사전 공공기획 제도' 도입을 위해 '도시계획상임기획단'을 '도시건축혁신단'으로 확대 개편하여 총원 58명 규모를 목표로 했던 것에 비해 과도하게 축소된 사유가 무엇인지 면밀한 검토가 필요함.

(12) 인건비의 증감

- 개정안에 따라 공무원 61명을 증원할 경우 추가 소요되는 인건비는 연간 약 51억 9천6백만원 수준으로 추정됨.
- 현재 행정안전부가 통보한 2019년 서울시 기준인건비는 1조 7,752억원 (기준인력 20,712명)이며, 서울시는 1조 7,418억원의 인건비를 편성해 334억원의 여유가 있음.
- 2019년 정원 증원에 따른 인건비 비용추계 242억원(2019.1.1. 정원 개정 152억원, 2019.4.30. 정원개정 38억원과 이번 조례 개정에 따른 52억원 포함)을 제외하면 여유 규모는 약 92억원으로 추정됨.

〈공무원 증원에 따른 인건비 소요 산정내역〉

(단위 : 천원)

구 분	소요비용	세 부 내 역	비 고
합 계	51,958,885	○ 일반직(+61명) : +5,195,885 ▷ 2급(+1) : 139,445 × 1명 = 139,445 ▷ 3급(+2) : 128,326 × 2명 = 256,652 ▷ 4급(+4) : 111,458 × 4명 = 445,832 ▷ 5급(+6) : 103,029 × 6명 = 618,174 ▷ 6급(+24) : 84,897 × 24명 = 2,037,528 ▷ 7급(+22) : 72,270 × 22명 = 1,589,940 ▷ 8급(+2) : 54,157 × 2명 = 108,314	'19년 인건비 예산편성기준

다. 종합의견

- 개정안은 지난 제287회 정례회에서 부결된 「서울특별시 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비교해 서울민주주의위원회와 서울혁신기획관에서 각각 4명과 2명을 감원하고, 경제정책실과 시의회사무처에 각각 2명과 1명을 증원했음.
- 집행부는 민선 7기 시정성과 창출을 위해 증원이 불가피함을 이유로 부결된 조례안을 주요사항의 변경 없이 다시 제출했으나, 부결과정에서 지적된 잦은 조직개편에 대한 근본적인 해결책 없이 증원인력 일부만 조정하였음.
- 특히,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20일 이상으로 정하고 있는 입법예고 기간⁴⁾을 하루로 단축(2019.6.26.)하여 개정안을 제출한 것은 법 절차상의 안정성을 훼손하고 시민의 입법참여와 알권리를 원천적으로 차단하게 했다는 점에서 엄중한 주의가 요구됨.
- 한편, 「중기기본인력운용계획」은 법정계획으로 지방자치단체의 행정수요와 사업계획, 업무량 증가 등을 중·장기적으로 종합 검토해 미래의 인력수급을 전망하고, 합리적이고 균형있는 조직운영을 위해 매년 5년 단위로 수립하고 있음⁵⁾.

4) 「서울특별시 자치법규의 입법에 관한 조례」 제8조(예고기간) 입법예고 기간은 예고할 때 시장이 정하되,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20일 이상으로 한다.

5) 「지방행정·정원규정」 제23조(인력운용계획의 수립·시행)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계획적이고 효율적인 인력운영을 위하여 중기기본인력운용계획(이하 “기본인력계획”이라 한다)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② 기본인력계획은 매년 1월 1일을 기준으로 하여 5년간의 연간계획으로 수립하되, 「지방재정법」 제33조에 따른 중기지방재정계획과 연계되도록 하여야 한다

- 이번 개정안으로 인해 서울시 정원은 18,533명으로 증원되며, 이는 「중기기본인력운용계획」의 2019년 목표치인 18,385명보다 148명을 초과하는 결과를 초래하게 되며, 단체장이 자신이 수립한 법정계획을 스스로 위반하고 있다는 점에서 제도적 방지대책을 강구해야 할 것임.

〈중기기본인력운용계획에 따른 인력증감 내역〉

구 분	계	순증(a-b)	증원(a)	감원(b)
합 계		580	850	△270
2018년	18,239	-	-	-
2019년	18,385	146	369	△223
2020년	18,534	149	159	△10
2021년	18,662	128	144	△16
2022년	18,756	94	96	△2
2023년	18,819	63	82	△19

- 또한, 지난 번 부결과정에서 우리 위원회에서 우려를 표명했던 ▷ 서울민주주의위원회의 신설로 인한 대의민주주의제도의 훼손, ▷ 과도한 시민숙의예산으로 인한 시의회의 예산심의권 침해, ▷ 기능이 축소된 서울혁신기획관의 통·폐합, ▷ 중기 인력운영계획과의 합치 등에 대한 근본적인 해답 없이 부결안건과 크게 차이가 없는 개정안을 제출해 심의를 요청하는 것은 지방의회에 부여된 고유권한인 의안 심의권에 대한 중대한 도전이 될 수 있음.

IV. 질의 및 답변요지 : 「생략」 (회의록 참고)

V. 토론요지 : 「없음」

VI. 심사결과 : 원안가결

(재적위원 12명, 참석위원 7명, 전원찬성)

VII. 소수의견 요지 : 「생략」 (회의록 참고)

VIII. 기타 필요한 사항 : 「없음」

서울특별시 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안 번호	774
----------	-----

제출년월일 : 2019년 6월 28일
제출자 : 서울특별시장

1. 제안이유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기준 등에 관한 규정」의 개정에 따라 3급 이상 행정기구 수를 확대하고, 출자·출연기관 감사·조사 기능 확대 등 시정 핵심사업의 추진력을 확보하며, 시의회 예산결산 특별위원회 전문위원 신설 등 소요인력을 적기에 지원하고자 서울시 총정원을 18,472명에서 18,533명으로 61명 증원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 가. 시민민주주의 실현을 위한 ‘서울민주주의위원회’ 등 3급 이상 행정기구 신설, 출자·출연기관 감사·조사 전담기구인 ‘공공감사담당관’ 신설 등 시정 핵심사업 추진인력 증원(+56명)
- 나. 시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전문위원 및 상임위원회 전문위원실 의정활동 지원인력 증원(+5명)
- 다. 행정기구 신설 및 업무이관 등에 따른 기관 간 정원이체(58명)
 - (1) 서울민주주의위원회 신설: 본청 4급 △3명, 5급 이하 △55명
→ 합의제 4급 +3명, 5급 이하 +55명
 - (2) 납세자보호관 업무 이관(시민감사옴부즈만위원회 → 법무담당관):
합의제 5급 이하 △1 → 본청 5급 이하 +1
 - (3) 서울생활사박물관 업무 이관(박물관과 → 서울역사박물관):
본청 연구관 △1 → 사업소 연구관 +1

3.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1) 「지방자치법」 제112조,

(2)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기준 등에 관한 규정」 제30조

나. 예산조치: 협의 완료

다. 기 타

(1) 신·구조문 대비표: 별도 첨부

(2) 입법예고(2019. 6. 26.) 결과: 의견없음

(3) 비용추계서: 별도 첨부

서울특별시조례 제 호

서울특별시 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서울특별시 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 각 호 외의 부분 중 “18,472명”을 “18,533명”으로 하고, 같은 조 제1호 중 “10,437명”을 “10,415명”으로, 제4호 중 “328명”을 “333명”으로, 제5호 중 “160명”을 “238명”으로 한다.

별표 3 총계란을 다음과 같이 한다.

총계	18,533	
----	--------	--

같은 표 일반직 계란을 다음과 같이 한다

일반직 계	10,536	
-------	--------	--

같은 표 2·3급란을 다음과 같이 한다.

2·3급	24	18		1	3	2
------	----	----	--	---	---	---

같은 표 3급란을 다음과 같이 한다.

3급	20	10		1	9	
----	----	----	--	---	---	--

같은 표 4급란을 다음과 같이 한다.

4급	246	145	17	8	67	9
----	-----	-----	----	---	----	---

같은 표 5급 이하 소계란을 다음과 같이 한다.

5급 이하 소계	10,120					
----------	--------	--	--	--	--	--

같은 표 연구관란을 다음과 같이 한다.

연구관	62	4		34	24	
-----	----	---	--	----	----	--

부칙

이 조례는 2019년 7월 25일부터 시행한다. 단, 본청 연구관 1명 감축과 사업소 연구관 1명 증원 조정하는 사항은 2019년 8월 1일부터 시행한다.

신·구조문 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p>제2조(정원의 총수) 서울특별시에 두는 공무원 정원의 총수는 18,472명으로 하며 다음 각 호와 같다.</p> <p>1. 집행기관의 정원(제2호 및 제3호에 따른 공무원의 정원을 제외한다): 10,437명</p> <p>2. (생략)</p> <p>3. (생략)</p> <p>4. 의회사무기구의 정원 : 328명</p> <p>5. 합의제행정기관의 정원 : 160명</p> <p>【별표 3】 정원의 관리기관별 직급별 정원(제4조 관련)</p>	<p>제2조(정원의 총수) ----- ----- 18,533명 -----.</p> <p>1. ----- -----</p> <p>10,415명</p> <p>2. (현행과 같음)</p> <p>3. (현행과 같음)</p> <p>4. -----333명</p> <p>5. -----238명</p> <p>【별표 3】 정원의 관리기관별 직급별 정원(제4조 관련)</p>																																																																																																																																																																																						
<table border="1" style="width: 100%; border-collapse: collapse;"> <thead> <tr> <th>구 분</th> <th>계</th> <th>본 청</th> <th>의 회 사무처</th> <th>직 속 기관</th> <th>사업소</th> <th>합의제 행정기관</th> </tr> </thead> <tbody> <tr> <td>총 계</td> <td style="color: blue;">18,472</td> <td></td> <td></td> <td></td> <td></td> <td></td> </tr> <tr> <td>정무직 계</td> <td style="text-align: center;">2</td> <td></td> <td></td> <td></td> <td></td> <td></td> </tr> <tr> <td>일반직 계</td> <td style="color: blue;">10,475</td> <td></td> <td></td> <td></td> <td></td> <td></td> </tr> <tr> <td>1급</td> <td style="text-align: center;">7</td> <td style="text-align: center;">6</td> <td style="text-align: center;">1</td> <td></td> <td></td> <td></td> </tr> <tr> <td>2·3급</td> <td style="color: blue;">23</td> <td style="text-align: center;">18</td> <td></td> <td style="text-align: center;">1</td> <td style="text-align: center;">3</td> <td style="text-align: center;">1</td> </tr> <tr> <td>3급</td> <td style="color: blue;">18</td> <td style="color: blue;">8</td> <td></td> <td style="text-align: center;">1</td> <td style="text-align: center;">9</td> <td></td> </tr> <tr> <td>3·4급</td> <td style="text-align: center;">5</td> <td style="text-align: center;">5</td> <td></td> <td></td> <td></td> <td></td> </tr> <tr> <td>4급</td> <td style="color: blue;">242</td> <td style="color: blue;">147</td> <td style="color: blue;">16</td> <td style="text-align: center;">8</td> <td style="text-align: center;">67</td> <td style="text-align: center;">4</td> </tr> <tr> <td>4·5급</td> <td style="text-align: center;">10</td> <td style="text-align: center;">10</td> <td></td> <td></td> <td></td> <td></td> </tr> <tr> <td>5급이하 소계</td> <td style="color: blue;">10,066</td> <td></td> <td></td> <td></td> <td></td> <td></td> </tr> <tr> <td>전문경력관 소계</td> <td style="text-align: center;">104</td> <td></td> <td></td> <td></td> <td></td> <td></td> </tr> <tr> <td>별정직 계</td> <td style="text-align: center;">37</td> <td></td> <td></td> <td></td> <td></td> <td></td> </tr> </tbody> </table>	구 분	계	본 청	의 회 사무처	직 속 기관	사업소	합의제 행정기관	총 계	18,472						정무직 계	2						일반직 계	10,475						1급	7	6	1				2·3급	23	18		1	3	1	3급	18	8		1	9		3·4급	5	5					4급	242	147	16	8	67	4	4·5급	10	10					5급이하 소계	10,066						전문경력관 소계	104						별정직 계	37						<table border="1" style="width: 100%; border-collapse: collapse;"> <thead> <tr> <th>구 분</th> <th>계</th> <th>본 청</th> <th>의 회 사무처</th> <th>직 속 기관</th> <th>사업소</th> <th>합의제 행정기관</th> </tr> </thead> <tbody> <tr> <td>총 계</td> <td style="color: red;">18,533</td> <td></td> <td></td> <td></td> <td></td> <td></td> </tr> <tr> <td>정무직 계</td> <td style="text-align: center;">2</td> <td></td> <td></td> <td></td> <td></td> <td></td> </tr> <tr> <td>일반직 계</td> <td style="color: red;">10,536</td> <td></td> <td></td> <td></td> <td></td> <td></td> </tr> <tr> <td>1급</td> <td style="text-align: center;">7</td> <td style="text-align: center;">6</td> <td style="text-align: center;">1</td> <td></td> <td></td> <td></td> </tr> <tr> <td>2·3급</td> <td style="color: red;">24</td> <td style="text-align: center;">18</td> <td></td> <td style="text-align: center;">1</td> <td style="text-align: center;">3</td> <td style="text-align: center;">2</td> </tr> <tr> <td>3급</td> <td style="color: red;">20</td> <td style="color: red;">10</td> <td></td> <td style="text-align: center;">1</td> <td style="text-align: center;">9</td> <td></td> </tr> <tr> <td>3·4급</td> <td style="text-align: center;">5</td> <td style="text-align: center;">5</td> <td></td> <td></td> <td></td> <td></td> </tr> <tr> <td>4급</td> <td style="color: red;">246</td> <td style="color: red;">145</td> <td style="color: red;">17</td> <td style="text-align: center;">8</td> <td style="text-align: center;">67</td> <td style="text-align: center;">9</td> </tr> <tr> <td>4·5급</td> <td style="text-align: center;">10</td> <td style="text-align: center;">10</td> <td></td> <td></td> <td></td> <td></td> </tr> <tr> <td>5급이하 소계</td> <td style="color: red;">10,120</td> <td></td> <td></td> <td></td> <td></td> <td></td> </tr> <tr> <td>전문경력관 소계</td> <td style="text-align: center;">104</td> <td></td> <td></td> <td></td> <td></td> <td></td> </tr> <tr> <td>별정직 계</td> <td style="text-align: center;">37</td> <td></td> <td></td> <td></td> <td></td> <td></td> </tr> </tbody> </table>	구 분	계	본 청	의 회 사무처	직 속 기관	사업소	합의제 행정기관	총 계	18,533						정무직 계	2						일반직 계	10,536						1급	7	6	1				2·3급	24	18		1	3	2	3급	20	10		1	9		3·4급	5	5					4급	246	145	17	8	67	9	4·5급	10	10					5급이하 소계	10,120						전문경력관 소계	104						별정직 계	37					
구 분	계	본 청	의 회 사무처	직 속 기관	사업소	합의제 행정기관																																																																																																																																																																																	
총 계	18,472																																																																																																																																																																																						
정무직 계	2																																																																																																																																																																																						
일반직 계	10,475																																																																																																																																																																																						
1급	7	6	1																																																																																																																																																																																				
2·3급	23	18		1	3	1																																																																																																																																																																																	
3급	18	8		1	9																																																																																																																																																																																		
3·4급	5	5																																																																																																																																																																																					
4급	242	147	16	8	67	4																																																																																																																																																																																	
4·5급	10	10																																																																																																																																																																																					
5급이하 소계	10,066																																																																																																																																																																																						
전문경력관 소계	104																																																																																																																																																																																						
별정직 계	37																																																																																																																																																																																						
구 분	계	본 청	의 회 사무처	직 속 기관	사업소	합의제 행정기관																																																																																																																																																																																	
총 계	18,533																																																																																																																																																																																						
정무직 계	2																																																																																																																																																																																						
일반직 계	10,536																																																																																																																																																																																						
1급	7	6	1																																																																																																																																																																																				
2·3급	24	18		1	3	2																																																																																																																																																																																	
3급	20	10		1	9																																																																																																																																																																																		
3·4급	5	5																																																																																																																																																																																					
4급	246	145	17	8	67	9																																																																																																																																																																																	
4·5급	10	10																																																																																																																																																																																					
5급이하 소계	10,120																																																																																																																																																																																						
전문경력관 소계	104																																																																																																																																																																																						
별정직 계	37																																																																																																																																																																																						

현 행							개 정 안						
구 분	계	본 청	의 회 사무처	직속 기관	사업소	합의제 행정기관	구 분	계	본 청	의 회 사무처	직속 기관	사업소	합의제 행정기관
4급상당	5	3	2				4급상당	5	3	2			
5급상당 이하 소계	32						5급상당 이하 소계	32					
연구직 계	387						연구직 계	387					
연구관	62	5		34	23		연구관	62	4		34	24	
연구사	325						연구사	325					
지도직 계	24						지도직 계	24					
소방공무원 계	7,027						소방공무원 계	7,027					
소방준감	5	4		1			소방준감	5	4		1		
소방정	29	2		27			소방정	29	2		27		
소방정 또는 기술서기관	1			1			소방정 또는 기술서기관	1			1		
소방령 이하 계	6,992						소방령 이하 계	6,992					
교육공무원 계	520						교육공무원 계	520					
총 장	1				1		총 장	1			1		
교수 등	450				450		교수 등	450			450		
조 교	69						조 교	69					

비 용 추 계 서

I. 비용추계 요약

1. 비용발생 요인 : 서울특별시 공무원 정원을 18,472명에서 18,533명으로 총 61명 증원함에 있어 관련 인건비 발생
(일반직 +61명)

2. 비용추계의 전제 : 2019년 서울특별시 인건비 예산편성 기준에 의거 향후 5년간의 소요인건비 추계

3. 비용추계의 결과 (단위 : 천원)

구분 \ 연도		1차년도	2차년도	3차년도	4차년도	5차년도	합계
세입							
	소계(a)	2,234,231	5,289,411	5,384,620	5,481,543	5,580,211	23,970,017
세출	인건비						
	소계(b)						
□ 총 비용(a-b)		2,234,231	5,289,411	5,384,620	5,481,543	5,580,211	23,970,017

※ 매년 인건비 상승률 1.8%('19년 기준) 적용

※ 1차년도는 정원 배정시기 고려하여 5.2개월분으로 비용추계 (정원배정 시기 : '19.7.25.(예정))

4. 재원조달 방안 (단위 : 천원)

구분 \ 연도		1차년도	2차년도	3차년도	4차년도	5차년도	합계
국비							
시비	지방세수입	2,234,231	5,289,411	5,384,620	5,481,543	5,580,211	23,970,017
	세외수입						
	지방채 등						
민간							
기타							
합계		2,234,231	5,289,411	5,384,620	5,481,543	5,580,211	23,970,017

5. 덧붙이는 의견 : 없음

6. 작성자 : 서울특별시 조직담당관 (☎ 2133-6724)

II. 비용추계의 상세내역

1. 정원 변동내역 : +61명

○ 일반직 : +61명

- 2·3급 +1, 3급 +2, 4급 +4, 5급 +6, 6급 +24, 7급 +22, 8급 +2

2. 비용소요 추계 : 5,195,885천원

(단위 : 천원)

구 분	소요비용	세 부 내 역	비 고
합 계	+5,195,885	<p>◆ 총 계 : +5,195,885</p> <p>○ 일반직(+61명) : +5,195,885</p> <p>▷ 2급(+1) : 139,445 × 1명 = 139,445</p> <p>▷ 3급(+2) : 128,326 × 2명 = 256,652</p> <p>▷ 4급(+4) : 111,458 × 4명 = 445,832</p> <p>▷ 5급(+6) : 103,029 × 6명 = 618,174</p> <p>▷ 6급(+24) : 84,897 × 24명 = 2,037,528</p> <p>▷ 7급(+22) : 72,270 × 22명 = 1,589,940</p> <p>▷ 8급(+2) : 54,157 × 2명 = 108,314</p>	'19년 인건비 예산편성 기준

※ 2.3급 정원은 실제 2급으로 운영될 예정이므로 2급으로 비용추계

※ 비용추계 상세내역은 1년 기준으로 추계한 것임